

#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 제 1222 호 2020. 3. 12.(목)

###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25호[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26호[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27호[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7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47호[하천 점용 허가 고시]····· 1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48호[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변경) 고시]····· 1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50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51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6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310호[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1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312호[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319호[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변경) 공고] 2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331호[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333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공 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3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335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336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337호[도시계획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완료 공고]····· 6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338호[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340호[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342호[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94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복구 전자공보 확인방법</li> <li>☞ 복구 홈페이지(<a href="http://www.bukgu.ulsan.kr">www.bukgu.ulsan.kr</a>)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복구공보</li> </ul>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 복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0년 3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25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농소1동의 관할구역란 중 "신천동 1~87, 241~313, 745-2~745-30, 745-34·35, 745-39~745-41, 745-54~745-58, 745-74·75, 745-77~745-79, 745-83~745-101, 745-103~745-111, 745-118·121, 745-123~745-126, 745-128, 745-131~745-134, 745-139·140·142·143, 745-145~745-147, 745-150·152·155·156, 745-158~745-163, 745-165~745-170"을 "신천동 1~87, 241~313, 745-2~745-30, 745-34·35, 745-39~745-41, 745-54~745-58, 745-74·75, 745-77~745-79, 745-83~745-101, 745-103~745-111, 745-118·121, 745-123~745-126, 745-128, 745-131~745-134, 745-139·140·142·143, 745-145~745-147, 745-150·152·155·156, 745-158~745-163, 745-165~

745-170, 808-1~808-7, 809-1~809-5, 810-1~810-6, 811-1~811-8, 812-1~812-5, 813-1~813-9, 814-1~814-13, 815-1~815-11, 816-1~816-9, 817-1~817-12, 818-1~818-10, 819-1~819-11, 820-1~820-9, 821-1~821-9, 822, 823-1~823-9, 824-1~824-3, 825-1~825-7, 826-1~826-7, 827-1~827-27, 917”로 한다.

별표 2 중 연번 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p>매곡동 745-5, 745-13~745-15, 746-3~746-7, 747, 747-5, 748-4, 756-5~756-7, 758-1, 759-1~759-2, 760-1~760-3, 761, 762, 762-1, 765-1, 766-3~766-4, 766-7~766-9, 769-5, 771-12, 777-1~777-9, 778, 778-1~778-2, 779-1, 779-4, 780-12, 818-2, 837-1(20,069제곱미터)을 신천동으로 편입한다.</p>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신천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별표 1, 2 개정
  - 매곡동 745-5 등 46필지 20,069㎡를 신천동으로 편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0년 3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26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특산품, 관광 기념품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스탬프 투어 참여자
2. 관광 설명회, 홍보관, 박람회 등 참석자
3. 구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활동 참여자
4.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 외빈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관광해설사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구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지역관광 안내를 위해 관광해설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광해설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광자원 등에 대한 해설 서비스 제공
- 2.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 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해설사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제2항에 따른 활동에 대한 수당과 경비
- 2. 해설사증, 단체복 등 해설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 물품
- 3. 교육 및 연수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홍보물 및 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특산품, 관광 기념품 등 지원 대상 구체화(제5조제2항)
- 나.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내용 신설(제7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동 권 (인)

2020년 3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27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2항, 「지역보건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구민건강생활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1. 지역주민 대표
- 2. 학교보건 관계자
-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 5. 보건소장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회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회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회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회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협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유사한 기능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관리·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제적·회피 조항을 보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폐지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제2조, 제3조)
- 다.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제5조)
- 라.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제6조, 제7조)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47호

##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무 룡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공사 동울산지사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 23길 8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의 설치(전주 신설)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신현동 50번지

나. 면적 : 일시 6m<sup>2</sup>, 영구 0.196m<sup>2</sup>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일시 : 착공일로부터 1일

영구 : ~ 2024.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48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변경)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0. 03. 09.
2. 점용·사용의 목적 : 식물의 재배
3. 점용·사용의 장소 : 대안동 1059-1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3,357m<sup>2</sup>
  - 나. 기 간
    - 당초 : 2015. 01. 01. ~ 2019. 12. 31.
    - 변경 : 2020. 01. 01. ~ 2024. 0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주영\*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동\*\*로 1467-14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50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매곡동 130-2번지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3.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130-2	울산광역시 북구	매산로 146	2020-03-12	매산초등학교와 월드메르디앙사이애워 치하여위치예측성확보	2011-08-16
2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중산 지구 26B 5L	울산광역시 북구	신기11길 44	2020-03-12	신기3길인근위치연계 성반영하여일련번호부 여	2018-05-10
3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중산 지구 26B 4L	울산광역시 북구	신기11길 46	2020-03-12	신기3길인근위치연계 성반영하여일련번호부 여	2018-05-10
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22-6	울산광역시 북구	당수골28길 2	2020-03-12	당수나무가있는당수골 명칭사용하여서도로명 을부여함.	2017-05-04
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 지구 4B 13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길 21	2020-03-12	옛지명으로현재도사용 하는이름으로 도로명부여	2004-12-27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51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채전2길 12	구유동 101	2020. 3. 12.	건축물멸실
진장2길 21	진장명촌지구 4B 13L	2020. 3. 12.	건축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3.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310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한국**공사 동울산지사		
	대표자 (성 명)	한국**공사 동울산지사장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23길 8
소하천명		명 세 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가대동 908-7번지		
	면적	일시 6㎡, 영구 1㎡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일시 : 착공일로부터 1일간 영구 : ~ 2024. 12. 31.		
	목적 및 사유	인공구조물 설치 (전주 신설)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 - 312호

##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 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일정시간에는 작업할 수 없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기준 완화(제7조제1항 삭제)

### 3. 근거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및 같은 법 제 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환경위생과  
(전화 : 052-241-7774, 팩스 : 052-241-7769, E-mail : yjkim264@korea.kr)

####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과 신규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①구 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특 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 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장 비에 대하여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동절기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에 사용 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다. 다 만, 인근주민과 공사장 간의 합 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7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①  <u>&lt;삭 제&gt;</u></p>

## 근거 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9급 김유정 241-7774

#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조 례 안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 체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조 례 안 내 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319호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변경) 고시(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울산**교회		
	대표자 (성 명)	이병원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로 293-13
소하천명		수 성 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호계동 943-26번지		
	면적	193㎡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당초 : 2015. 01. 01. ~ 2019. 12. 31. 변경 : 2020. 01. 01. ~ 2024. 12. 31.		
	목적 및 사유	토지의 점용(집합건물)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20 - 331호

### 울산광역시 복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에 따라 구성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화 도모
-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문대상 공공건축물 시설물의 종류에 대한 확대 및 수정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도시시설물과 공공시설물 등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19조)
- 나. 공공건축물 시설물의 종류 확대 및 수정(안 제19조)

#### 3. 관계법령 : 「경관법」 제30조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도시과

- 전화번호 : 052)241-7922, 팩스번호 : 052)241-790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복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경관 자문대상 시설물”을 “경관 자문대상 건축물”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경관협의 대상 건축물 및 공공디자인”을 “경관 협의대상 건축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경관 자문 대상 건축물(제19조제3항제2호 관련)**

분류	시설물 종류
공공 건축물	가.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문화 및 집회시설 마. 노유자시설 바. 업무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 다만, 타 위원회에서 경관분야 심의를 받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 3] 경관 협의 대상 건축물(제19조제5항 관련)**

분류	시설물 종류
산업로	가. 폭 15m 이상 도로변(단, 산업로의 경우 도로변 완충녹지도 도로로 간주) 3층 이하 또는 연면적 1,000㎡ 미만의 신축 건축물 나. 그 외 기타지역은 5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호계로	3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	2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매곡천	2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경관위원회)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u>별표 2의 경관 자문 대상 시설물에 관한 사항</u>                      3. (생략)                      4. (생략)                      ④ (생략)                      ⑤ <u>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3의 경관협의 대상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u></p> <p>[별표1] (생략)                      [별표 2] <u>경관 자문대상 시설물(제19조제3항제2호 관련)</u>                      □ 건축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분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시설물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공건축물</td> <td>                             가. 업무시설(공공기관 청사, 동행 정복지센터)                              나. 공공도서관                              다. 문화 및 체육시설                              라. 복지시설                              ※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 다만, 타 위원회에서 경관분야 심의를 받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 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td> </tr> </tbody> </table> <p>□ 도시시설물</p>	분류	시설물 종류	공공건축물	가. 업무시설(공공기관 청사, 동행 정복지센터) 나. 공공도서관 다. 문화 및 체육시설 라. 복지시설 ※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 다만, 타 위원회에서 경관분야 심의를 받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 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p>제19조(경관위원회)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u>별표 2의 경관 자문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u>                      3. (생략)                      4. (생략)                      ④ (생략)                      ⑤ <u>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3의 경관협의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u></p> <p>[별표1] (생략)                      [별표 2] <u>경관 자문대상 건축물(제19조제3항제2호 관련)</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분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시설물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공건축물</td> <td>                             가.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무,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문화 및 집회시설                              마. 노유자시설                              바. 업무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 다만, 타 위원회에서 경관분야 심의를 받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 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td> </tr> </tbody> </table> <p>&lt; 삭제 &gt;</p>	분류	시설물 종류	공공건축물	가.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무,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문화 및 집회시설 마. 노유자시설 바. 업무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 다만, 타 위원회에서 경관분야 심의를 받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 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분류	시설물 종류								
공공건축물	가. 업무시설(공공기관 청사, 동행 정복지센터) 나. 공공도서관 다. 문화 및 체육시설 라. 복지시설 ※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 다만, 타 위원회에서 경관분야 심의를 받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 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분류	시설물 종류								
공공건축물	가.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무,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문화 및 집회시설 마. 노유자시설 바. 업무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 다만, 타 위원회에서 경관분야 심의를 받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 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15%;">분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시설물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도로시설물</td> <td>가. 교량            나. 고가차도 다. 지하차도    라. 보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간시설</td> <td>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나.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것</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공미술</td> <td>가.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비, 시계탑, 조명탑 나. 단위면적이 150㎡ 이상인 벽화 등 각종 색채사업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td> </tr> </tbody> </table> <p>※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 기성품, 현상공모(설계경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등에 의한 당선작은 자문대상에서 제외</p> <p><b>[별표 3] 경관 협의 대상(제19조제5항 관련)</b></p> <p><input type="checkbox"/> 건축물                  (표 생략)</p> <p><input type="checkbox"/> 공공시설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15%;">분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시설물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휴게시설물</td> <td>벤치, 파고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위생시설물</td> <td>휴지통, 공중화장실, 음수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서비스시설물</td> <td>자전거보관대, 공중전화부스, 관광안내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시설물</td> <td>가로판매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통행시설물</td> <td>보도블럭, 버스/택시정류장, 보도육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녹지시설물</td> <td>가로수 보호틀/덮개, 가로수보호대, 가로화분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호시설물</td> <td>블라드, 방호울타리, 방음벽, 석축/옹벽, 가설울타리/가림막, 중앙분리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조명시설물</td> <td>가로등/보안등, 보행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교통시설물</td> <td>신호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보시설물</td> <td>관광안내도/안내표지/문화재안내판, 각종안내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게시대, 공공게시판, 주차안내/요금 표지/관리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관리시설물</td> <td>배전함, 맨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시설물</td> <td>단위면적이 150㎡ 미만인 벽화 등 각종 색채사업</td> </tr> </tbody> </table>	분류	시설물 종류	도로시설물	가. 교량            나. 고가차도 다. 지하차도    라. 보도	공간시설	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나.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것	공공미술	가.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비, 시계탑, 조명탑 나. 단위면적이 150㎡ 이상인 벽화 등 각종 색채사업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분류	시설물 종류	휴게시설물	벤치, 파고라	위생시설물	휴지통, 공중화장실, 음수대	서비스시설물	자전거보관대, 공중전화부스, 관광안내소	판매시설물	가로판매대	통행시설물	보도블럭, 버스/택시정류장, 보도육교	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틀/덮개, 가로수보호대, 가로화분대	보호시설물	블라드, 방호울타리, 방음벽, 석축/옹벽, 가설울타리/가림막, 중앙분리대	조명시설물	가로등/보안등, 보행등	교통시설물	신호등	정보시설물	관광안내도/안내표지/문화재안내판, 각종안내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게시대, 공공게시판, 주차안내/요금 표지/관리소	관리시설물	배전함, 맨홀	기타시설물	단위면적이 150㎡ 미만인 벽화 등 각종 색채사업	<p><b>[별표 3] 경관 협의 대상 건축물(제19조제5항 관련)</b></p> <p>(표 생략)</p> <p>&lt; 삭제 &gt;</p>
분류	시설물 종류																																		
도로시설물	가. 교량            나. 고가차도 다. 지하차도    라. 보도																																		
공간시설	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나.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것																																		
공공미술	가.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비, 시계탑, 조명탑 나. 단위면적이 150㎡ 이상인 벽화 등 각종 색채사업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분류	시설물 종류																																		
휴게시설물	벤치, 파고라																																		
위생시설물	휴지통, 공중화장실, 음수대																																		
서비스시설물	자전거보관대, 공중전화부스, 관광안내소																																		
판매시설물	가로판매대																																		
통행시설물	보도블럭, 버스/택시정류장, 보도육교																																		
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틀/덮개, 가로수보호대, 가로화분대																																		
보호시설물	블라드, 방호울타리, 방음벽, 석축/옹벽, 가설울타리/가림막, 중앙분리대																																		
조명시설물	가로등/보안등, 보행등																																		
교통시설물	신호등																																		
정보시설물	관광안내도/안내표지/문화재안내판, 각종안내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게시대, 공공게시판, 주차안내/요금 표지/관리소																																		
관리시설물	배전함, 맨홀																																		
기타시설물	단위면적이 150㎡ 미만인 벽화 등 각종 색채사업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의 건 제 출 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20 - 333호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공 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공공 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제정이유

- 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나. 지역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 근거 마련
- 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업무를 체계화하고 지자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 2. 주요내용

- 가. 정의(안 제2조)
  - 공공디자인, 공공조형물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 나.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공공디자인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진흥계획 수립(5년마다 재정비)
  - 진흥계획 수립·변경할 때에는 구의 공보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

시 등

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제13조)

-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검토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 구성인원 : 15명 이내
-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조형물 설치 절차 등

라. 공공디자인 심의 및 공공조형물 설치(안 제14조~제17조)

- 심의대상 및 공공조형물 설치 등

마. 공공조형물의 관리(안 제20조)

- 연간 1회 이상 관리계획 수립·시행
-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비치 등

바.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안 제19조)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발굴
- 공모를 통한 공공디자인안 선정 등

3. 관계법령

- 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 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도시과

- 전화번호 : 052)241-7922, 팩스번호 : 052)241-790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 나.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공공조형물”이란 공원·도로·녹지대 등 구 및 지방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각·공예·벽화·미디어아트·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5조(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북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 기준)**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기준(이하 “공공디자인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기준에는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등을 울산광역시 북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제8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변경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의 자문
3. 공공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4. 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기준 준수 여부
5. 공공조형물의 활용 및 관리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공공디자인 관련 공무원
3. 건축·도시·토목·조경·조형예술·시각디자인·산업디자인·색채·조명·옥외광고 등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회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이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공공디자인 심의 및 공공조형물 설치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대상)** ① 공공디자인 검토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시설·공공이미지·공공용품: 사업비 1억원 이상
2. 공공공간: 사업비 10억원 이상
3. 공공조형물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 및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대상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제외)**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울산광역시 경관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3.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4.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5.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6. 구입하는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7.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8.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공조형물 중 공공시설물등에 부속되는 조형적 시설물 및 마을 입구 등을 안내하는 조형물과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 등)** ①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신청서에 도서 등 디자인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기준에 따른다.

**제17조(공공조형물 설치)** 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울산광역시 복구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에 대하여 사전타당성 검토 후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5장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18조(공공디자인 검토기준)**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복구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검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검토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의 발굴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과 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0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관리, 철거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 및 작품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을 활성화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2.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22조(위탁)**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시행이 결정된 공공디자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의 건 제 출 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335호

##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가. 기획조정실(국장급) 신설 및 담당관제 도입
- 나. 국 명칭 변경, 총무과 분과, 부서 실·국 조정 등 주민 행정 수요에 맞춘 행정기구 조정

#### 2. 주요내용

##### 가. 기획조정실 신설 및 담당관제 도입

- 1)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2조 및 제3조)

- 가) 국장 → 실·국장
- 나) 실·과장 → 담당관·과장

- 2) 기획조정실 신설, 하부 부서 및 분장사무 규정(안 제4조)

##### 나. 행정지원국

- 1) 재무 및 재산관리 분장사무 삭제(안 제5조제2항제2호)

다. 복지환경국

- 1) 국명칭 변경 : 복지경제국 → 복지환경국(안 제6조)
- 2) 부서이관 : 경제일자리과 → 기획조정실(안 제6조제1항)
- 3) 경제일자리 분장사무 삭제(안 제6조제2항제4호)

라. 안전건설국 : 국 명칭 오기 수정(안 제7조제2항)

마. 보건소 : 분장사무 근거 법률 조항 수정(안 제10조제1항)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홍보실

2)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붙임 1.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 조문 대비표  
3. 근거법규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중 “국장 및 실·과장”을 “실·국장 및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장, 실·과장”을 “실·국장, 담당관·과장”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중 “국”을 “실·국”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행정지원국·복지경제국”을 “기획조정실·행정지원국·복지환경국”으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삭제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소통담당관, 회계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종합기획·조정, 기구·정원 관리 및 사무배분, 예산 편성·배정,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 구정 홍보, 법제·소송 및 구의회 업무 총괄,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 총괄 등에 관한 사무
2. 동행정 총괄, 자치분권(주민주권), 진정·고충 민원 접수 및 처리, 공무원

비위조사 및 재산등록, 계약심사 등에 관한 사무

3. 구·시·국비회계, 복식부기, 재무결산, 재산관리, 공사·용역·물품계약, 청  
사 및 공용차량 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기업지원 및 공장등록, 노동행정,  
지역 성장 산업·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 공동체 및 사회  
적경제 진흥 등에 관한 사무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 제목 및 제1항 중 “복지경제국”을 각각 “복지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를 “농수산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삭  
제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1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국장과 기획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 기획업무담당주사”를 “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실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국·소장, 기획홍보실장, 주관부서 과장”을 “실·국·소장, 기획 업무 부서장, 주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실·국·소장, 과장”을 “실·국·소·관장,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

정실장, 행정지원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예산담당”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예산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경제국장,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예산담당”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국·실·소장이나 또는 과장”을 “실·국·소·관장 또는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부서의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일자리과장”을 “물가대책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주무과장”을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⑯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⑰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⑱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 : 업무 담당 실·국장
2. 분임징수관 : 업무 담당 부서장
3. 재무관 : 기획조정실장
4.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관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①9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업무담당 국장”을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무부서 과장”을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②0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경제일자리과”를 “구의 노사 업무 담당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일자리과장”을 “노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1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②2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자리업무 담당과장”을 “일자리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②3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국·실·소장 및 과장”을 “실·국·소·관장 및 담당관·과

장”으로 한다.

㉔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경제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㉕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실·과”를 “실·국, 담당관·과”로 한다.

㉖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으로 한다.

㉗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9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장급 공무원 3명”을 “실·국장급 공무원 4명”으로 한다.

㉘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㉙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을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으로 한다.

㉚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㉓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의료급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㉔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㉕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 : 복지환경국장
3. 재무관 : 기획조정실장
4.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관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㉖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㉗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국·소의 장”을 “실·국·소·관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나목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소장”을 “실·국·소·관장”으로 한다.

㉞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 실·과의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㉟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과”를 각각 “담당관·과”로 한다.

㊱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재 무 관 : 기획조정실장
- 4. 분 임 재 무 관 : 회계담당관
- 5.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㊲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국장, 실·과장”을 “실·국장,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본청의 <u>국장, 실·과장</u>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u>실·과장</u>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생략)</p>	<p>제2조(실·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 ----- 실·국장, 담당관·과장 ----- -- 담당관·과장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행정지원국·복지경제국·안전건설국</u>을 둔다.</p>	<p>제3조(실·국의 설치) ----- ---<u>기획조정실·행정지원국·복지환경국</u>-----</p>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u>기획홍보실, 주민소통실</u>을 둔다.</p>	<p>제4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u>기획조정실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소통담당관, 회계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을 둔다.</u></p> <p>② <u>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u>구정 종합기획·조정, 지구·정원 관리 및 사무배분, 예산 편성·배정,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 구정 홍보, 법제·소송 및 구의회 업무 총괄,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 총괄 등에 관한 사무</u></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2(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구정의 종합기획·조정, 구정시책과 주요사업의 확인 평가, 기구·정원의 관리 및 사무배분,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지시사항 총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u></li> <li>2. <u>예산의 편성·배정·관리,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u></li> <li>3. <u>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u></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u>동행정 총괄, 자치분권(주민주권), 진정·고충 민원 접수 및 처리, 공무원 비위조사 및 재산등록, 계약심사 등에 관한 사무</u></li> <li>3. <u>구·시·국비회계, 복식부기, 재무결산, 재산관리, 공사·용역·물품계약,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등에 관한 사무</u></li> <li>4. <u>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기업지원 및 공장등록, 노동행정, 지역성장 산업·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진흥 등에 관한 사무</u></li> </ol> <p>&lt;삭제&gt;</p>

현 행	개 정 안
<p>4. <u>법제와 소송, 구의회 관련업무 총괄</u></p> <p>제4조의3(주민소통실) 주민소통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동행정 총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p> <p>2. 진정·고충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p> <p>3.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p> <p>4. 공무원의 비위조사와 공직자 재산등록,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p>	<p>&lt;삭제&gt;</p>
<p>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u>구·시·국비회계, 물품지출 업무, 재산관리, 복식부기, 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무</u></p> <p>3. ~ 7. (생략)</p>	<p>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3. ~ 7. (현행과 같음)</p>
<p>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u>복지경제국</u>에는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u>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u>,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를 둔다.</p> <p>② <u>복지경제국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3. (생략)</p>	<p>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u>복지환경국</u>----- ----- <u>농수산과</u> ----- -----</p> <p>② <u>복지환경국장</u> ----- -----</p> <p>1. ~ 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4. <u>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기업지원 육성, 노동행정, 지역공동체 등에 관한 사무</u></p> <p>5. ~ 11. (생략)</p> <p>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생략)</p> <p>② <u>건설도시국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6. (생략)</p> <p>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u>제9조</u>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p> <p>② (생략)</p>	<p>&lt;삭제&gt;</p> <p>5. ~ 11. (현행과 같음)</p> <p>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안전건설국장</u> ----- -----</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10조(소관사무) ① ----- ----- <u>제11조</u> ----- -----</p> <p>②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336호

###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주민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탄력적 정원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임

####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643명

나. 직급별 정원 조정

- 1) 4급 : 증 1명(4명 → 5명)
- 2) 5급 : 증 1명(37명 → 38명)
- 3) 6급 이하 : 증 26명(571명 → 597명)

다. 기관별 정원 조정

- 1) 본청

가) 4급 중 1명( 3명 → 4명)

나) 5급 중 1명(22명 → 23명)

2)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 변동없음

**3.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홍보실

2)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붙임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3. 근거법규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615명”을 “64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01명”을 “628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4명”을 “1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u>643</u>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
일 반 직 계	<u>641</u>	-				
3급	1	1	-	-	-	-
4급	<u>5</u>	<u>4</u>	-	1	-	-
5급	<u>38</u>	<u>23</u>	3	3	1	8
6급 이하 계	<u>597</u>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b>615명</b>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b>601명</b>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b>14명</b></p>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 청</th> <th>의회 사무과</th> <th>직속 기관</th> <th>사업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b>615</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청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b>613</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b>4</b></td> <td><b>3</b></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5급</td> <td><b>37</b></td> <td><b>22</b></td> <td>3</td> <td>3</td> <td>1</td> <td>8</td> </tr> <tr> <td>6급이하 계</td> <td><b>571</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급상당 이하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b>615</b>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b>613</b>			-			3급	1	1	-	-	-	-	4급	<b>4</b>	<b>3</b>	-	1	-	-	5급	<b>37</b>	<b>22</b>	3	3	1	8	6급이하 계	<b>571</b>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p>제2조(정원의 총수) ----- ----- <b>643명</b> -----</p> <p>1. ----- <b>628명</b> 2. ----- <b>15명</b></p>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 청</th> <th>의회 사무과</th> <th>직속 기관</th> <th>사업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b>643</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청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b>641</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b>5</b></td> <td><b>4</b></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5급</td> <td><b>38</b></td> <td><b>23</b></td> <td>3</td> <td>3</td> <td>1</td> <td>8</td> </tr> <tr> <td>6급이하 계</td> <td><b>597</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급상당 이하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b>643</b>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b>641</b>			-			3급	1	1	-	-	-	-	4급	<b>5</b>	<b>4</b>	-	1	-	-	5급	<b>38</b>	<b>23</b>	3	3	1	8	6급이하 계	<b>597</b>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b>615</b>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b>613</b>			-																																																																																																																																																							
3급	1	1	-	-	-	-																																																																																																																																																					
4급	<b>4</b>	<b>3</b>	-	1	-	-																																																																																																																																																					
5급	<b>37</b>	<b>22</b>	3	3	1	8																																																																																																																																																					
6급이하 계	<b>571</b>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b>643</b>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b>641</b>			-																																																																																																																																																							
3급	1	1	-	-	-	-																																																																																																																																																					
4급	<b>5</b>	<b>4</b>	-	1	-	-																																																																																																																																																					
5급	<b>38</b>	<b>23</b>	3	3	1	8																																																																																																																																																					
6급이하 계	<b>597</b>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337호

## 도시계획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완료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129-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 나. 명 칭 :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3. 사업규모

구 분	시설명	규 모	비 고
사회복지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1동, 지하1층/지상4층 (대지면적 1,482㎡ /연면적 2,931.8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가. 기 간 : 2018. 10. 31. ~ 2020. 3. 11.
6.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정책과(☎ 052-241-76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20 - 338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다자녀가정’ 관련 자치법규의 통일된 정의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 용어 정의 변경(안 제2조)

-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  
→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 3. 근거법규

가.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가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 052)241-7653, 팩스번호 : 052)241-765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 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u>다자녀가정</u>”이란 <u>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다자녀가정</u>”이란 <u>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u></p>

#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 성 명(단 체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 - 340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복구 상징물(브랜드슬로건, 캐릭터)이 새로이 개발됨에 따라 구 상징 공식 도시브랜드 이미지로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징물 활용 및 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상징물 목적,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상징물의 종류(안 제3조)
- 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등 규정(안 제4조)
-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안 제5조)
- 상징물의 사용승인, 사용료 규정(안 제6조, 안 제7조)
- [별표1]에서 [별표5] 마련 : 상징물 종류 추가·변경, 순서 변경
- [별지 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 서식 개정

###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저작권법」

#### 4. 조례안 전문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주민소통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1층 주민소통실

【주민소통실 전화번호 : 052)241-7261, 팩스번호 : 052)241-726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2.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의견서 제출서식**

#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조례안명 : 울산광역시 복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b>붙임 2</b>	<b>전부개정조례안</b>
-------------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울산광역시 복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복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 복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별표 1
2. 휘장: 별표 2
3. 브랜드슬로건: 별표 3
4. 캐릭터: 별표 4
5. 구목(느티나무)·구화(참나리)·구조(산까치): 별표 5

**제4조(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기는 구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며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 날에도 게양한다.

③ 구기의 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④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정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상징물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의 상징물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징물의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 제43조의8을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 구 기



## 1. 구기의 규격 (가로:세로 = 3:2)

- 가. 깃면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는 3대2의 비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크기는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정한다.  
 다. 깃면의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의 구성은 위 그림과 같이 한다.

## 2. 색상

- 가. 기본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바탕색은 흰색
- (2) 원형의 윗부분은 녹색(C80%+Y100%)
- (3) 원형의 아랫부분은 청색(C100%+M60%)
- (4) 조그만 원은 주황색(M50%+Y100%)
- (5) 글자는 검은색

- 나. 구기는 용도에 따라 심벌마크 등을 단색으로 제작, 사용할 수 있다.

## 3. 표현내용

- 가. 전체 둥근 원은 북구 구민의 화합을 의미

- 나. 위의 녹색 부분과 아래의 청색부분은 북구의 지역적 특색인 산과 바다를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을 표현

- 다. 중간의 주황색 둥근 원은 동해의 일출과 희망의 태양 및 북구에 위치한 자동차 산업등 공업의 메카를 의미.

## 4. 작도법

- 가. 심벌마크 및 로고타입을 작도시 제판용 원고를 이용하여 사진 제판에 의한 축소, 확대 방법으로 사용한다
- 나. 이 방법이 불가피한 경우 본 항에 제시된 비례 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 【별표2】

## 휘장 (심벌마크)



## 1. 색상

가. 기본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바탕색은 흰색
- (2) 원형의 윗부분은 녹색(C 80% + Y 100%)
- (3) 원형의 아랫부분은 청색(C 100% + M 60%)
- (4) 조그만 원은 주황색(M 50% + Y 100%)

나. 구기는 용도에 따라 심벌마크 등을 단색으로 제작, 사용할 수 있다.

## 2. 표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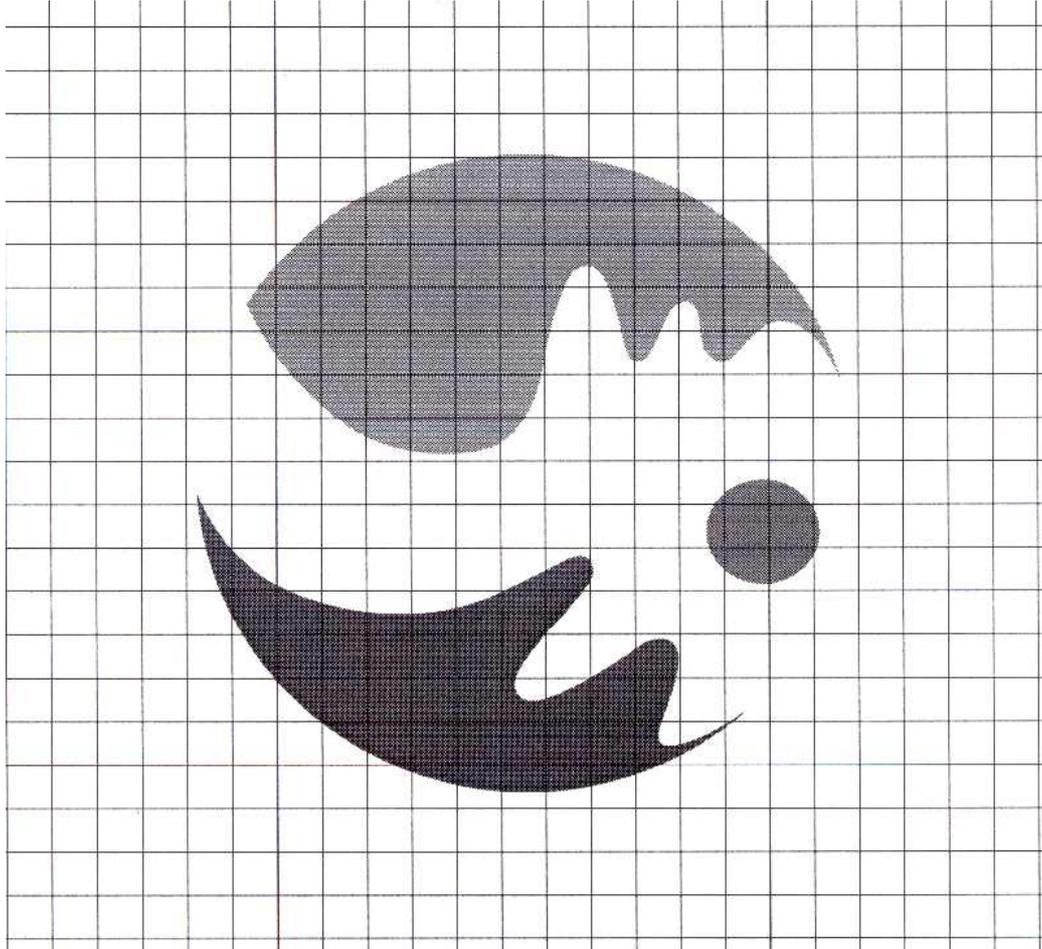
가. 전체 둥근 원은 북구 구민의 화합을 의미

나. 위의 녹색 부분과 아래의 청색부분은 북구의 지역적 특색인 산과 바다를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을 표현

다. 중간의 주황색 둥근 원은 동해의 일출과 희망의 태양 및 북구에 위치한 자동차 산업등 공업의 메카를 의미

## 3. 작도법

- 가. 심벌마크 및 로고타입을 작도시 제판용 원고를 이용하여 사진 제판에 의한 축소, 확대 방법으로 사용한다
- 나. 이 방법이 불가피한 경우 본 항에 제시된 비례 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별표3】

브랜드슬로건



1. 색 상

가. 기본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Main Color

Sub Color

**Bulkkot Nuri RED**  
Four Color Processing : M100%+Y90%+K20%  
Pantone 711 C

**Bulkkot Nuri YELLOW**  
Four Color Processing : M50%+Y90%  
Pantone 1375 C

**Bulkkot Nuri ORANGE**  
Four Color Processing : M80%+Y100%  
Pantone 1665 C

**Bulkkot Nuri GREEN**  
Four Color Processing : C100%+M30%+Y100%+K10%  
Pantone 347 C

**ECOB BLACK**  
K100%

나. 브랜드슬로건은 용도에 따라 단색으로 하여 제작·사용 할 수 있다.

2. 표현내용

- 가. 불꽃누리 울산복구는 밤에는 불 테마도시, 낮에는 꽃 테마도시를 의미하며 세상을 뜻하는 '누리'를 조합해서 미래성장의 도시 이미지를 표현
- 나. 불의 'ㅂ'과 꽃의 'ㅈ'에 쇠부리를 상징하는 불, 구화인 참나리를 시각화 요소로 적용하고 캘리그래피 로고타입을 통해 불이 피어오르고 꽃이 피어나는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표현

## 3. 작도법

- 가. 브랜드슬로건 작도 시 제판용 원고를 이용하여 사진 제판에 의한 축소, 확대방법으로 사용한다.
- 나. 이 방법이 불가피한 경우 본 항에 제시된 비례 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별표4】

캐 리 커



1. 색 상

가. 기본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CMYK	RGB	Pantone
White	White	White
M80, Y100, K80	R84, G10	4695U
M90, Y100	R231, G56, B13	Red 032U
M50, Y100	R242, G150	Orange 021U
C80, Y100	G166, B60	361U
C100, M50	G104, B182	Process Blue U
K44	R172, G172, B172	Cool Gray 8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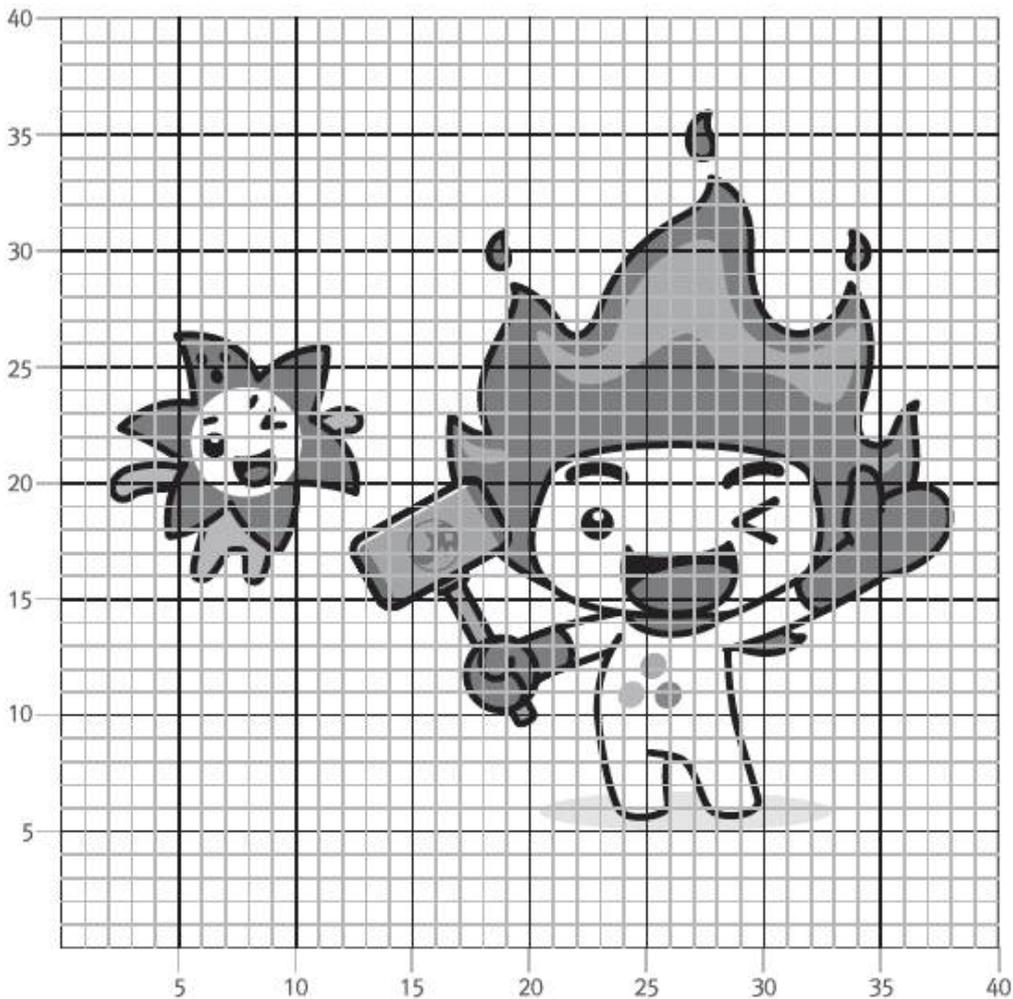
나. 캐릭터는 용도에 따라 단색으로 하여 제작·사용 할 수 있다.

2. 표현내용

- 가. 메인캐릭터 쇠부리는 울산 북구의 대표축제인 ‘울산 쇠부리 축제’를 상징하며, 철 제련 시 필요한 용광로의 타오르는 불처럼 뜨거운 열정을 지닌 구민을 상징적으로 표현
- 나. 서브캐릭터 참나리는 청초, 우아함과 순결을 의미하는 울산 북구의 상징 꽃으로, 성장 가능한 울산 북구의 맑고 푸른 미래, 행복과 번영을 상징적으로 표현
- 다. 메인캐릭터가 들고 있는 망치는 전통적으로 쇠를 다루는 도구로써 4차 산업을 주도하는 디지털방망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

3. 작도법

- 가. 캐릭터 작도 시 제판용 원고를 이용하여 사진 제판에 의한 축소, 확대 방법으로 사용한다.
- 나. 이 방법이 불가피한 경우 본 항에 제시된 비례 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별표5】

구 목 · 구 화 · 구 조



○ 구 목 : 느티나무

느티나무는 화합, 번영, 안정성과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장수성 나무로써 복구의 힘찬 번영과 도약을 의미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복구의 희망을 상징함



○ 구 화 : 참나리

참나리꽃은 청초 우아함과 순결함을 지닌 꽃으로 번식력이 강하여 신설 복구의 깨끗함과 번영을 상징함



○ 구 조 : 산까치

산까치는 친숙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새로 더불어 사는 복구의 희망과 친환경성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이미지를 상징함.

■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 관리 조례 [별지 서식]

(앞면)

##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접수일자
------	------

신청인	성 명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상 호 ( 법 인 명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전 자 우 편 주 소	
사용 상징물			
사용 기간			
사용 목적			
사용 내용 (구체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용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붙임 3****관련법령****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8.10.16.] [법률 제15794호, 2018.10.16.]

**제43조의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지식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43조의8(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18. 10. 16.>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에 지식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1.3.] [대통령령 제29939호, 2019.7.2.]

**제52조의4(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법 제43조의7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지식재산: 별표 4
2.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지식재산: 별표 5
3. 법 제4조제1항제5호다목의 지식재산: 별표 6
4. 법 제4조제1항제5호라목의 지식재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의6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31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52조의5(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8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의8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본조신설 2015. 7. 20.]

## 저작권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23호, 2018. 10. 16.]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342호

## 울산광역시 복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12.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제130호, 2020. 5. 1. 시행) 개정사항 반영
- 나. 지방이양(확대) 된 복구청장 이하 집행품의 전결기준액 상향 조정 및 재무관, 징수관 위임범위 확대 등

###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주요내용이 회계에 관한 사항이며, 재무회계운영기준(복식부기)과 혼선 우려

\* (당초) 「울산광역시 복구 재무회계 규칙」

(변경) 「울산광역시 복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나. 재무회계 규칙 재편

1) 행정안전부 훈령 중복규정 삭제, 훈령에서 위임한 조문만 존치

## 다. 징수관 및 재무관 위임범위, 집행품의 전결기준액 상향(확대) 조정

### 1) 징수관의 분임징수관 직무위임 범위 확대(안 제3조)

- 가) 확정된 세입, 과오납금 반환 등 외의 기타 위임기준액 400만원 → 5천만원으로 상향(사무전결규칙 동일)
- 나) 제1관서 징수관의 직무위임 범위 추가

### 2) 재무관의 분임재무관 직무위임 범위 확대(안 제4조)

#### 가) 본청

-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1억원 → 3억원 상향
- 용역·제조·물건 매입 추정금액 5천만원 → 2억원 상향
- 기타 추정금액 500만원 → 5천만원 상향

#### 나) 제1관서

- 공사 추정금액 3천만원 → 5천만원 상향
- 용역·제조 추정금액 2천만원 → 3천만원 상향
- 물건 매입 및 기타 추정금액 500만원 → 1천만원 상향

### 3) 예산집행품의 전결기준액 조정(안 제5조)

#### 가) 부구청장

-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2억원 → 10억원 상향
- 용역·제조·물건 매입 추정금액 1억원 → 5억원 상향
- 기타 추정금액 5천만원 → 2억원 상향

#### 나) 국장

-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1억원 → 5억원 상향
- 용역·제조·물건 매입 추정금액 5천만원 → 2억원 상향
- 기타 추정금액 3천만원 → 1억원 상향

#### 다) 과장

- 추정금액 2천만원 → 5천만원 상향

#### 라) 제1관서 소속 과장

- 추정금액 5백만원 → 1천만원 상향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4. 예고기간 : 2020. 3. 12. ~ 4. 1.(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4. 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전화 : 052)241-7301 팩스 : 052)241-7209】

6. 기타사항

가. 개정규칙안 전문은 우리 구 총무과에 비치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붙임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울산광역시 복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 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른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울산광역시 복구 징수관의 직무를 분임징수관에 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천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 징수관의 직무를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회회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관의 직무를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여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전출금·지방채원리금·행정 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 재무관의 직무를 제1관서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3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직무수행비·업무추진비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공사,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 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품의의 전결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른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기획홍보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공통사항 중 3. 예산집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공통사항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3. 예산집행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 공사·토지매입,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물건의 매입, 기타 1건당 2억원 이하 집행	기안				○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 공사·토지매입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물건의 매입, 기타 1건당 1억원 이하 집행	기안			○		
	다.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집행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봉급, 수당, 여비, 공공요금,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집행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물품의 관리청구, 수리, 검수, 보관	기안		○			

[별표 1]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청	구의회	제1관서	그 밖의 관서 및 임시관서
회 계 책 입 관	행정지원국장	-	-	-
징 수 관	행정지원국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분 입 징 수 관	부과과장, 징수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
재 무 관	행정지원국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입재무관)	-
분 입 재 무 관	총무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행정지원국장	-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기획홍보실장	-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
총괄기금관리관	기획홍보실장	-	-	-
통 합 지 출 관	총무과장	-	-	-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	의사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
수 입 금 출 납 원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실·과 지출업무담당	-	각 실·과 지출업무담당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지출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담당자 외 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 비고 1. 00담당: 팀장·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담당자: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출원: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할 수 있음

## [별표 2]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	그 밖의 관서
보건소 · 문화예술회관 · 동	

##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합의 대상 경비(제6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1. 공사 · 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 · 구매	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전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	전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전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부
8. 그 밖의 경비	전부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	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	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	전부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	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	전부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전부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전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전부

